
Ⅲ. 국내 금융환경 변화

1.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의 변화

가. 국제 추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강화를 비롯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남.
 -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금융규제 완화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감수, 금융기관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체계, 그림자금융과 파생상품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공감대 형성
 - 과거 금융규제의 강화가 개별국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번 규제강화 움직임은 상당 부분이 규제 재정행위(Regulation Arbitrage)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적인 공조체계 하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임
 - 이러한 국제공조체제는 G20, BCBS, FSB, IMF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비롯하여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를 강화시켰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 개선에 있어 국제적인 공조 움직임에 동참하여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내 금융규제 및 감독 체제에 반영함.

- 한편 미국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은행규제인 볼커룰을 포함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대공황 이후 가장 강력한 금융개혁안으로 평가됨.

- 이 법은 2010년 7월에 발효되었으나 세부 규정이 완성되지 못하여 4년 여가 경과한 현재에도 아직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및 다국적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 내용

- 글로벌 금융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해 설명함.
 -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바젤 III)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그림자금융 규제
 -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 회계기준 통일
 - 신용평가사 규제 강화

1)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안(이하 바젤 III로 부름)에서는 자본의 손실흡수력을 높이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새로 도입함.
 - 최저필요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완충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최저필요자본규제 강화
 - 보통주 자본의 최저비율을 기존 2.0에서 4.5로 상향 조정

- 만기의 영구성, 청산 시 후순위성, 배당의 비강제성을 골자로 하는 자본의 적격성 기준 강화
- 영업권, 이연자산, 자기주식 등 손실흡수력이 약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보통주 자본에서 공제

■ 자본보전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 은행들은 최저필요자본에 더하여 위험가중자산의 2.5%에 해당하는 보통주자본을 평상시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하였다가 위기 시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해야 함.
-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되 2019년에 전면 시행 예정
- 적립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은행의 이익배분 제한

■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

- 최저필요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
- 경기상승기에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립된 자본을 사용토록 함.
-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 후 2019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유동성 규제

- 유동성 위험 관리의 국제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동성 위기 시 은행의 본원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두 가지의 유동성 규제 기준이 새롭게 도입됨.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는 은행의 단기 현금인출사태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급격한 자금유출이 30일간 지속되는 시장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는 개별 은행의 위기가 1년간 지속되어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

준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요구

- 우리나라 은행의 바젤 III 충족 여부
 - BCBS가 실시한 계량영향평가에 따르면 2009년 말 국내은행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 Tier1 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모두 바젤 III 최저규제비율(각각 7.0%, 8.5%, 10.5%)을 상회
 - 그러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최저규제비율(100%)을 하회

- 금융기관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 확충은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들은 위험기중자산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응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안전자산인 국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그 결과 국고채와 위험자산 간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소속 보험회사도 자기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거대 금융기관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촉발시킨 바 있으므로, 사전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 금융기관의 위험을 국가 전체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IMF-BIS-FSB 공동으로 각국 당국이 특정 금융기관, 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SIFI에 대해서는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을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기타 다양한 추가적인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 정상적인 영업기간에도 주기적으로 자체적인 도산계획(Living Will)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됨.
 - 한편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국제적 은행이 부실해졌을 경우 효율적인 은행 정리를 위해서 BCBS의 Cross-Border Resolution Group이 정리절차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SIFI에 대한 규제 ·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볼커룰임.
 -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 및 은행계열사는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할 수 없으며, Tier 1 자기자본의 3% 이상을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없음.
 - 보험을 포함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도 SIFI로 지정될 경우 자기계정거래와 사모펀드 투자 한도가 설정됨.

-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SIFI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금융기관 기준을 정하여 규제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은행은 물론 투자금융회사나 보험회사도 회사의 부도가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를 가질 경우 국내 SIFI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계정거래,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투자에 제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하지만 국내 상업은행의 자기계정거래 규모가 작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

실에서 이와 같은 규제가 도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3) 그림자금융 규제

-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그림자금융으로 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FSB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시킬 권고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
 - 그림자금융은 정규 은행시스템 밖의 금융기관이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증개를 의미함.
-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FSB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함.
 - 첫째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시스템 위협의 발생 여부를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전략임.
 - 둘째는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다섯 개의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전략임.

4) 파생금융상품시장 안전성 강화

- 장외 파생상품은 표준화된 거래소 금융상품과는 달리 거래 쌍방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융상품임.
 - 양자간 거래 규모가 크게 팽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 노출이 매우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으로 되었고 그 결과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이 누적됨.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노정되었음.
 - 거래상대방 위험 노출에 대한 투명성 불충분
 - 부적절한 담보 관행
 - 복잡한 거래 과정
 - 조정되지 않은 부도 관리 절차들

- G20는 2009년에 투명성을 개선하고,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외파생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합의
 - 모든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거래보관소(Trade Repository)에 보고되어야 함.
 - 모든 표준화된 계약은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함.
 - 모든 표준화된 계약은 적절한 거래소나 전자거래플랫폼을 통해 매매되어야 함.
 - 중앙청산소에 의해 청산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자기자본과 마진이 요구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동참함.
 - 한국거래소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중앙청산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파생금융상품 거래보관소도 설립할 예정임.

5) 국제회계기준 도입

- 우리나라는 2011년 1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을 의무화함.

나.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개혁 전망

1) 과거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관치금융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다차입 및 과잉투자에 있다고 지적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감독 체계를 도입

-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는 외화 건전성 비율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의 단기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음을 주목
 - 이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더하여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됨.
 - 은행의 외환관련 파생상품 포지션 규제나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개 등을 포함한 외화건전성 규제가 새로 도입된 거시건전성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진행되던 외환자유화 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면 중단됨.
 - 글로벌 외환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외채 규모의 증가가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시각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외화관련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함.
 - 이와 같은 외환관련 규제 강화는 외환시장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과 운영을 제약하고 외환시장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선 내용 수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 감독 및 규제 체계의 강화와 글로벌 공조 움직임에 동조하여 이들 내용을 수용함.
 -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조치
 - 파생금융상품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 국제회계기준 도입

3) 금융규제 개혁 노력

- 국제적인 금융기관 규제 강화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
 - 2014년 중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안에는 금융규제에 대한 검토 및 개혁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체제를 마련
 - 하지만 금융업권 간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금융회사의 외환관련 규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규제 등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못함.

4) 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관청을 별도로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2. 금융환경의 글로벌화

-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개도국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및 한국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동시에 진행

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입 현황

- 2014년 말 현재 국내진입 외국금융기관수는 총 159개²⁾에 달함.
 - 업종별로는 은행(58), 자산운용(25), 증권(23), 손해보험(20) 등 부문에 진입
 - 국가별로는 미국(37), 영국(17), 독일(15), 일본(15)의 순

〈표 Ⅲ-1〉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현황(2014년 말)

구분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합계
은행	3	7	5	6	5	6	26	58
증권	1	5	4	2	3	3	5	23
자산운용	2	8	4	2	-	1	8	25
생명보험	1	4	1	1	-	1	2	10
손해보험	4	6	-	2	-	2	6	20
여신전문	4	3	1	2	-	1	3	14
투자자문	-	4	2	-	-	-	3	9
합계	15	37	17	15	8	14	53	159

자료: 금융감독원.

1) 은행

- 2014년 말 현재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수는 58개임.
 - 국가별로는 미국(7), 일본(6), 프랑스(6), 영국(5), 중국(5) 등
- 2014년 9월 말 현재 외은지점의 점유율(총자산기준)은 12.2%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최근 다소 회복되는 모습

2)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포함.

〈표 Ⅲ-2〉 외은지점의 점유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9
점유율(말잔 기준, %)	8.8	7.8	10.0	9.3	12.2

자료: 금융감독원.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중국계 은행들의 자산은 연평균 4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
 - 2008년 말 6조 원 수준이던 총자산이 2014년 9월 말 48조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점유율도 2.2%로 증가

〈표 Ⅲ-3〉 중국계 은행들의 총자산 및 점유율

구분	2012	2013	2014. 9
총자산(조 원)	14	26	48
점유율(말잔 기준, %)	0.7	1.3	2.2

자료: 금융감독원.

2) 생명보험

- 2014년 말 현재 10개 외국계 생보사가 한국에 진출
 - 미국계가 4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
- 2014년 9월 말 누적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외국계 생보사의 점유율은 13.9%임.
 - 외국계 생명보험사 점유율은 과도한 사업비 지출, 제한된 판매 채널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

〈표 Ⅲ-4〉 외국계 생명보험사 점유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9
점유율 (보험료수입 기준, %)	19.7	19.2	15.4	16.3	13.9

자료: 금융감독원.

3) 손해보험

- 2014년 말 현재 20개 외국계 손보사가 한국에 진출
 - 국가별로는 미국(6), 독일(4)의 순임.
- 2014년 9월 말 현재 점유율(보유보험료 기준)은 3.2%

〈표 III-5〉 외국계 손해보험사 점유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9
점유율 (보유보험료 기준, %)	3.7	3.3	3.0	3.3	3.2

자료: 금융감독원.

4) 증권

- 23개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 진입
 - 미국(5), 영국(4)의 순이며, 중국의 경우 현지법인 1개와 사무소 2개를 개설한 상태

나. 최근 중국계 금융기관의 한국진출 사례와 배경

- 최근 안방(安邦)보험을 비롯한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국내진출 행보에 관심이 집중
 - 안방보험은 2015년 2월, 우리나라 동양생명 지분 57.5%(1.1조 원) 인수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네덜란드 보험사 Vivat를 인수하기로 결정
 - 그 외에 동 사는 뉴욕 월도프호텔, 네덜란드 Fidea 보험사(2014. 10) 및 벨기에 Delta Lloyd 은행(2014. 12) 등을 인수한 바 있음.
- 한편 근래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중국 금융기관들은 한국계 금융기관의 인수전에

꾸준히 참여

- 공상은행은 2010년 광주은행, 푸싱그룹은 2014년 LIG 손해보험, KDB 생명보험 등의 인수전에 참여한 바 있음.
- 여타지역에서는 건설은행이 2006년 BOA 아시아법인을 인수하였으며 공상은행은 2007년 인도네시아 할림은행을 시작으로 태국 ACL 은행, 동아은행 미국 현지법인을 인수
 - 2013년 말 현재 18개 중국계 은행이 51개 국가에 진출하여 1,127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자산규모 1.2조 달러)

■ 이처럼 중국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금융자원의 효율적 활용, 위안화 국제화 추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

-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금융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대두
 - 종전 국가외환관리국(SAFE), 중국투자공사(CIC) 등 일부 기관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함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한편, 민간기관의 '자본에 의한 국제경제 진입'을 도모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위안화 결제수요 증대, 위안화 상품거래 증가 등 위안화 수요의 확대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국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
- 중국기업의 해외자원 확보 등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국 금융기관의 동반 진출 필요

다. 한국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 2014년 말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총 391³⁾개

3)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포함.

■ 업종별로는 은행(162), 증권(83), 손해보험(54) 등의 순임.

○ 진출대상국은 중국(68), 미국(52), 베트남(44), 홍콩(37) 등

〈표 Ⅲ-6〉 한국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2014년 말)

업종	미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폴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홍콩	기타	합계
은행	15	8	18	5	7	10	6	10	15	12	56	162
증권	8	-	8	6	7	-	5	7	20	16	6	83
자산운용	6	-	5	3	1	1	-	-	7	6	5	34
생명보험	7	1	2	-	4	1	1	3	7	1	2	29
손해보험	13	1	7	3	5	1	4	3	11	1	5	54
여신전문	2	1	4	-	1	1	2	1	8	1	5	26
지주회사	1	-	-	2	-	-	-	-	-	-	0	3
합계	52	11	44	19	25	14	18	24	68	37	79	391

자료: 금융감독원.

3. 핀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의 발달

가. 핀테크 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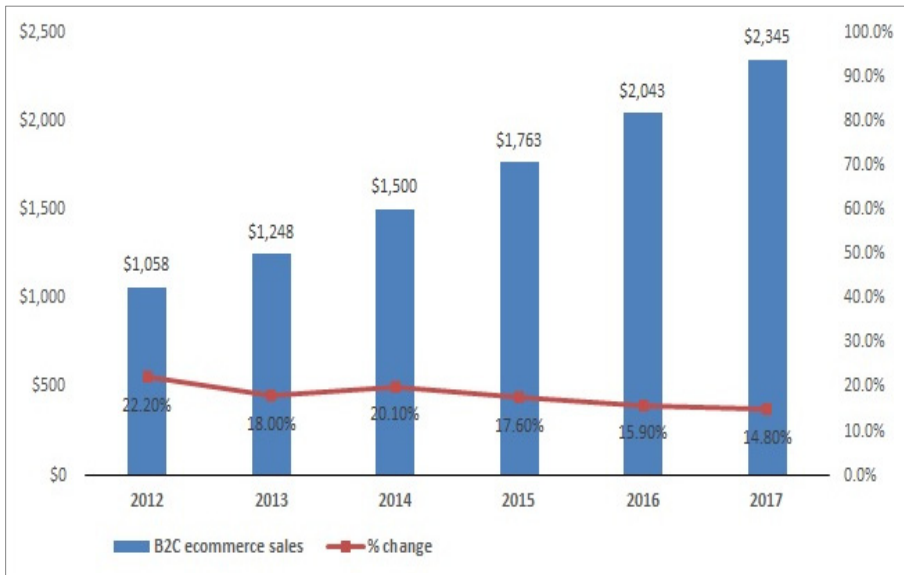
■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의미

○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는 주로 지급결제, 송금, 대출, 개인자산관리, 자금조달, 은행인프라 제공 등이며 향후 금융과 관련된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할 전망

■ 핀테크 성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의 증가, 인터넷 및 모바일의 보급 및 이용의 급증 등에 기인

-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세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매년 17% 이상 성장하여 2013년 1.2조 달러에서 2017년에는 2.3조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
 - 국내 B2C 전자상거래도 최근 10년간 매년 19% 성장하여 2013년 38.5조 원에 달함.

(그림 III-1) 세계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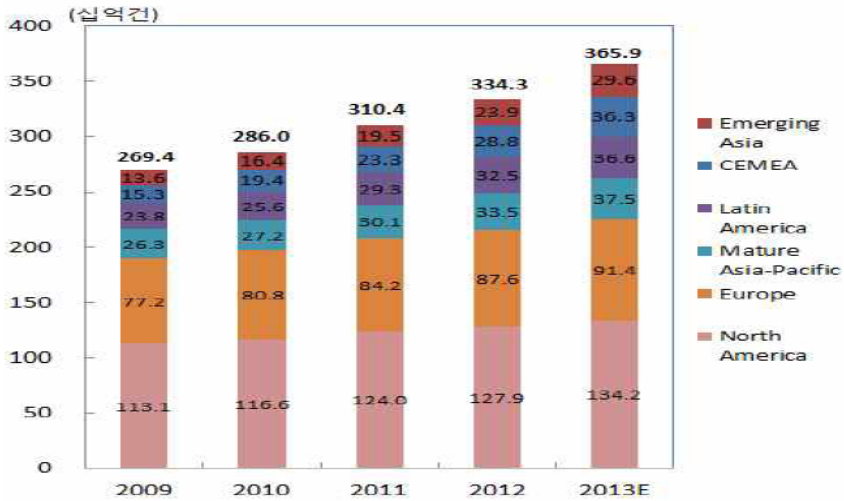


자료: eMarketer.

-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의 증가) 세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규모는 2009~2012년 중 연평균 7.5%, 2013년 중 9.4% 성장하여 건수 기준으로 3,656억 건에 달함.

- 국내도 인터넷뱅킹 등을 중심으로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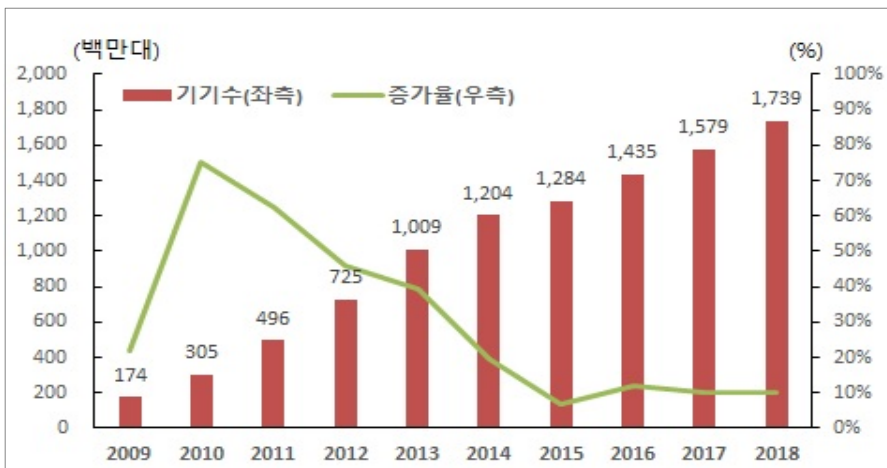
〈그림 Ⅲ-2〉 세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현황(건수)



자료: Capgemini(2014).

- (인터넷 및 모바일의 보급 및 이용의 급증) 세계 스마트폰 보급은 2009년 1.7억 대에서 2018년 17억 대로 10배나 늘어날 전망
 - 모바일 결제건수도 2011년 70억 건에서 2015년 470억 건 예상

〈그림 Ⅲ-3〉 세계 스마트폰 보급대수 전망



자료: Statista.

- 이처럼 지급결제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페이팔, 구글,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거대 IT기업들이 소액결제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초기의 단순한 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역할에서 전자화폐발행업 등의 인가를 통해 은행의 고유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 국내에서도 최근 이동통신업체뿐 아니라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이 금융권과의 제휴 등을 통해 지급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

나. 핀테크 기업 현황

1) 국외기업

- 글로벌 IT기업은 뛰어난 IT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검색, 단말기공급 등 각자 고유 영역에서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
 - 이베이(페이팔)와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및 지급결제, 구글은 검색 및 검색광고, 애플은 휴대폰 및 태블릿 단말기,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분야에서 각각 독보적 위치를 확보
 - 이들 기업은 전세계 대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을 기록

〈표 III-7〉 주요 글로벌 IT기업 현황

구분	아마존	이베이 (페이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리바바 (알리페이)
설립연도	1994	1995	1998	1976	2004	1999
상장시기	1997. 5	1998. 9	2004. 8	1980. 12	2012. 5	2014. 9
주요사업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플랫폼	검색 및 검색광고	컴퓨터, 단말기 제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플랫폼

자료: 각사 Annual Report.

■ 해외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는 ①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등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 및 결제대금예치(Escrow) 업무, ② 자체선불계정을 이용한 개인간(P2P) 이체 및 대금결제 서비스, ③ 은행 등과 제휴한 대출 중개 및 펀드 판매 등 금융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은행예금 이체 등을 중개하는 지급결제대행 및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제공

〈표 Ⅲ-8〉 해외 IT기업 제공 서비스

기업명	지급 결제 대행	선불계정			모바일 지갑	모바일 POS	기타
		대금 결제	P2P 이체	실물 카드			
페이팔	○	○	○	○	○	○	대출 중개
구글	○	○	○	○	○	X	-
아마존	○	○	○	X	○	○	대출 중개
애플	○	○	X	X	○	X	-
페이스북	○	○	X	X	X	X	-
알리페이	○	○	○	X	○	X	대출 중개, 펀드판매

자료: 한국은행.

2) 국내기업

■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각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와 인터넷 포털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최대 회원을 보유한 IT기업임.

○ 2014년 현재 카카오 가입자 수는 1.4억 명에 달하며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 네이버 가입자수는 33백만 명으로 국내 검색포털 서비스 점유율 1위이며, 계

열사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업체 라인(LINE) 가입자수는 4.9억 명(국내 가입자수는 12백만 명)에 달함.

〈표 Ⅲ-9〉 주요 국내 IT기업 현황

구분	카카오	다음	네이버
설립연도	2006. 12	1995. 2	1999. 6
상장시기	-	1999. 11	2002
주요사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검색, 인터넷 포털	검색, 인터넷 포털,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가입자수	1.4억 명	38백만 명	33백만 명 (라인: 4.9억 명)

자료: 각사, 연차보고서 등.

■ 카카오, 네이버의 자회사인 캠프모바일 등 IT기업은 은행 또는 지급결제대행기관과 연계하여 개인간 송금서비스 또는 온라인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

○ SNS 업체인 카카오는 2014. 11월 은행이 개발한 모바일지갑인뱅크월렛을 활용하여 카카오 이용자간 소액송금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매장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제공

– 또한 LG CNS와 제휴를 통해 2014. 9월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도입

○ 네이버는 지급결제대행업체와 제휴하여 SNS 서비스인 밴드(Band)회원 간 회비 등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 중

〈표 Ⅲ-10〉 국내 IT기업 제공 서비스

기업	플랫폼	지급결제 및 금융서비스	제휴기관	세부 내용
카카오	뱅크월렛	송금	은행, 금융결제원	카카오톡 이용자 간 소액송금 (이체한도 일 10만 원)
		지급결제	은행, 금융결제원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결제
	카카오 페이	지급결제	카드사, 지급결제 대행업체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매장 결제
	증권 플러스	자산관리	증권사	주식거래와 증권정보 제공
네이버 (캠프모바일)	밴드	송금	지급결제대행업체	밴드 회원간 회비 송금

자료: 한국은행.

다.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수익성 악화 가능성

- 그동안 은행의 지급서비스는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영역으로 맥킨지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은행의 수익 중 34%인 1.3조 달러가 지급결제 분야에서 발생하였음.
 - 특히 은행의 지급결제수수료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은 결제성예금에서 발생하는 순이자수입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 향후 핀테크 기업의 소액결제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 및 카드사 등 기존 금융기관이 주도하던 지급서비스 시장을 잠식하고 수수료 수입 축소 등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 고객기반 약화 가능성

- “지급결제는 은행 고객과 총체적인 금융거래 관계를 맺기 위한 교두보(Beach-Head)이자 핵심 통로(Gateway)”인데 지급서비스가 축소될 경우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고객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McKinsey 2014; BCG 2014).
- 핀테크 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 또는 구매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객의 구매행태나 신용도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가 점차 감소